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5월 8일, 한정애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4.)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정애의원)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대포폰”이라 한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할 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범죄이용 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1) 대포폰 관련 위반 자진신고 시 형 감경·면제

○ 대포폰을 사용한 법률 위반을 자진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되기 전에 회수될 가능성과 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의 조기 적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타당성은 있음

○ 다만, ① 기존 법률인 「형법」에 따라서도 자진신고 시 형 감경 가능, ② ‘내구제¹⁾ 대출’에 악용될 우려에 대한 검토 필요 부분을 감안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내구제 대출자 등에게 면책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형법상 자수 감경도 가능한 만큼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보이스피싱 관련 자진신고는 이미 일원화된 경찰청 통합신고센터가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임

2) 대포폰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자진신고시스템 구축·운영

○ 대포폰 관련 범죄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대포폰 위험성에 대한 교육·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의 인식을

1)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약자로 주로 제도금융권 대출이 불가한 저신용자들이 본인 명의 휴대폰,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개통·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타인에게 넘긴 뒤,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을 대출하는 것을 의미함

제고해 명의 대여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타당성이 있음

- 다만, 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담당해야할 입법적 실익, ② 경찰청 산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신고·제보 업무를 일원화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산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신고·제보 업무를 일원화하여 추진할 필요

3) 대포폰 불법성 및 위험성 고지 의무

-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 단계에서 대포폰 개통·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사전 경각심을 높이고 일부 취약계층의 무지로 인한 명의 제공·개통을 예방할 수 있어 타당성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김장겸의원, 김현의원, 민병덕의원, 박상혁의원, 이정현의원, 이학영의원, 전용기의원, 최민희의원(2건), 한정애의원, 한민수의원, 황운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